

축산시책 방향 및 사료

1972년 6월 30일 개최되었던 사료검사업무 취급요령 개정에 관한 협의에 의하면 사료의 품질개선책으로 귀부에서는 사료검사 및 제재의 강화를 구상하고 계시나 축산업 발전과 배합사료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사료업자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사료의 자급도 저하, 농후사료, 의존가축의 무모한 증산, 외환수급의 문제점과 원료의 가격변동 및 양계(축)산물 가격 형성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와 그 대책을 건의하으니 성장과정에 있는 축산 및 사료업의 안정적 발전이 이룩되고 사료의 자급화와 가축증식의 적정화가 보장되도록 지도육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제점

- 가. 국내사료자원으로서의 농후사료의 활용도가 낮다. (식량과의 경합)
- 나. 국내사료자원의 이용도가 높은 축우 양돈 증식에 비하여 수입사료의 존도가 높은 양계증식이 높다. (농후사료부족량증대)
- 다. 외화수급사정으로 원료사료의 적기적량도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외환수급계획과 무역수출입기별공고)
- 라. 원료가격이 변동되어도 배합사료가격은 변경조정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강력한 물가의 안정책)
- 마. 원료조달의 지속성 결여로 원료 및 품질의 균일성 유지가 어렵다. (원료수급의 타율성)
- 바. 우리나라를 대로의 사양표준이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배합사료 생산이 어려우며 특히 효율성보다 경제성을 검토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른나라의 사양 표준 응용)

사. 공정규격이 절대적인 사료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일반조성분)

아. 현행 사료관리법의 제정 당시(10년전)에 비하여 현재의 여건은 많이 변동되었으므로 현실에 부합되는 법령의 개정보완이 필요함 (법의 현실화)

2. 대 책

가. 우리나라 축산시설책의 방향

- 1) 국내사료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식가축과 조사료확대이용가능한 가축증식의 극대화.
- 2) 농후사료(수입사료)의 존도가 높은 턱은 현재 수준으로 수직증식을 제한하여 사료의 수입규모를 완화시키고
- 3) 조사료의 증산과 재배를 도모하여 농후사료의 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자급사료 증산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배합사료가격의 현실화

국내사료자원의 이용율을 제고시키고 수입의 존도를 절감시키려면 배합사료가격의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축산물가격과 배합사료가격은 경영의 합리화가 이룩되도록 농후사료가격의 조정으로 축산물생산이 조절되도록 가격을 현실화하여 줄것.

다. 사료검사업무개정요지에 대한 대책

1) 사료공장시설조사(개정요지2항)

사료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귀부(현재는 각지도)에서 사료제조시설을 검사하여 시설기준에 도달하였다고 인정될 때에 배합사료공장을 등록하여 주고 있으므로 일단 등록을 받은 사료공장은 시설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동법 제15조(사료의 검사)의 규정에 의하면 “사료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소지하는 사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사료공장

검사업무취급에 관한 건의

1972. 7. 13

시설조사를 사료검사업무 취급 요령에 명문화할 필요가 없고 시설현황파악을 위해서는 별도계획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언제든지 시설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료채취

선진국의 사료검사시 사료채취에 있어서도 쌓여있는 포장중에서 5개의 포장을 발취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무더기(撒物)로 되어있는 사료에 있어서는 그 무더기의 5개 부위에서 골고루 사료를 채취하고 있는 예가 있으므로 수험자나 검사자가 모두 착오없도록 5개의 포장(또는 5部位)에서 사료를 채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3) 위배사료에 대한 제재

사료의 품질보장면에서 보더라도 국내 축산 및 사료 분야의 입지적조건이 복잡하여 사료공장이 감당할 수 없는 요인이 허다하여 조성분이 절대적이 아니므로 양축업자의 실리를 추구하는 견지에서 제재는 혈행대로 1회 위반시는 3개월 간 경고 동일사료의 2회위반시는 동일사료의 3개월 제조정지 동일사료의 3회 위반시는 동일사료의 등록취소를 계속 시행하여 주시고 오히려 일본에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고 검사결과를 널리 공표하여 양축가에게 주지시키므로서 양축가가 불량사료제조업자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간접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공표에 중점을 두어 간접적인 제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선도하여 주실것.

라. 기타행정조치

(1) 우리나라대로의 공정규격선정

국내 사료자원활용과 외환수급면을 감안하여 가축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사양표준을 제정하고 이에 맞는 공정규격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배합사료의 공정규격을 제정하지 말고 양축

<한국사료협회 농림부에 건의>

가가 희망하는 성분의 사료를 사료공장이 생산하여 포장에 반드시 성분보증표를 표시하여 판매토록 규제하고 당국은 판매하는 사료가 성분보증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제재를 가하므로서 사료공장이 자발적인 연구에 의하여 국내 사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도 자원 활용면에서 효과적이라 봅니다.

(2) 혈행 배합사료의 공정규격은 최소한의 품질보장을 위한 기준은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사료 가치판단의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오히려 가축에 유해하고 사료로 이용 불가능한 이물질을 고의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업자가 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품질보장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수입사료의 사용제한

사료의 수입의 존도 절감을 위하여 수입사료를 일정수준이상 배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국내산 사료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배합사료가격을 자유화하여 국내 자급도를 제고시키는 것도 사료의 수입의 존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4) 어분 대두박 등 단백질사료자원의 적기도입

1972년 5월이후 어분 대두박 등 단백질사료의 수요량 증대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사료수급면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득이 월료조달이 월활치 못하여 배합사료의 품질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봄부터의 왕성한 산란으로 인한 피로와 하철의 고온다습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산란율이 저하되고 빨리 폐계화할 염려가 있으나 이점 유의하시고 72년도에 책정된 물량만으로는 도저히 연말까지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4/4분기에는 배합사료생산 특히 품질면과 사료수급면에 차질이 초래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